- (2) 시스템 비계는 작업전 조립도(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연결 상세도 등)를 작성하고 조립도에 따라 조립하여야 한다.
- (3) 조립도에는 수직재와 수평재 및 벽이음, 승강통로 등의 조립 간격을 표기하여야 한다.
- (4) 시스템 비계의 높이가 31m이상인 경우에는 (2)에도 불구하고 해당 전문가의 안전확인을 받아야한다.
- (5) 해당 전문가의 안전확인을 받은 경우 시스템 비계는 설계 조건과 결과를 확인(작업조건, 하중조건, 풍하중, 수직보호망 충실률, 벽이음 간격 등)하여 조립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 (6) 시스템 비계의 재료는 안전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변형·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재사용 재료는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 (7) 조립·해체 또는 변경 작업은 작업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작업 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또한, 신호수를 배치하는 경우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8) 시스템비계를 조립·해체 및 변경 작업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여야 하며, 관리감독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가) 재료의 결함유무를 점검과 불량품 제거
- (나) 기구·공구·안전대 및 안전모 등의 점검과 불량품 제거
- (다) 작업방법 및 근로자 배치를 결정하고 작업 진행 상태의 감시
- (라) 안전대와 안전모 등의 착용 상태의 감시
- (마) 비, 눈, 바람 또는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작업의 중지
- (9) 비계 내부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켜야 한다.
- (10)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상·하 동시 작업을 금지시켜야 한다.